

# 초기경전 4부 니까야 한글 완역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생사지석등



## 연꽃 위에 불 밝히시니

허형만

대자대비

중생의 어리석음이어

사바의 어둠이어 물러가라

그리하여 오직 부처님 광명안이

천상천하에 가득하여지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간절한 염원 합장하듯

서로 가슴을 맞대고 머리를 들어

연꽃위에 불 밝히시는지나

두 마리의 사자가

발뼉꿍 치켜들고 까치발로

연꽃위에 불 밝히시니

은 우주의 처음과 끝이어

대자대비

부처님 향기 꿈결 같구나

부처님 승결 비단 같구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어 순결한 가슴이어〉 중에서

허형만 시인은... 1945년 전남 순천 출생. 1973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시집 〈영혼의 눈〉, 〈젓차〉, 〈눈먼 사랑〉 등.

## 초기불전연구, '맛지마 니까야' 마무리...18일 불경법회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초기불교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를 한글 완역했다. 이번 완역으로 초기불전연구원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경장을 의미하는 4부 니까야를 전부 한글로 완역하게 됐다. 2002년부터 10년 만이다.

4부 니까야는 2011년 초기불교 경전 연구·번역자인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4부 니까야를 완역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전재성 박사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데 비해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은 남방불교의 주석서를 모은 〈청정도론〉 번역 기준에 기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맛지마 니까야〉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앙굿따라 니까야〉 번역을 완료한 대림 스님이 맡았으며 감수는 각목 스님이 진행했다.

대림 스님은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맛지마 니까야〉는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 출가자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경 152개를 담고 있다. 수행에 관련된 만큼 자의 해석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석

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맛지마 니까야〉에는 3100개의 주해가 달려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은 4부 니까야 완역에 대해 "범어원전에 대한 한국불교의 이해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낸 좋은 보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불교의 세계화

### ‘청정도론’ 기준 번역 특징

세밀한 주석...10년 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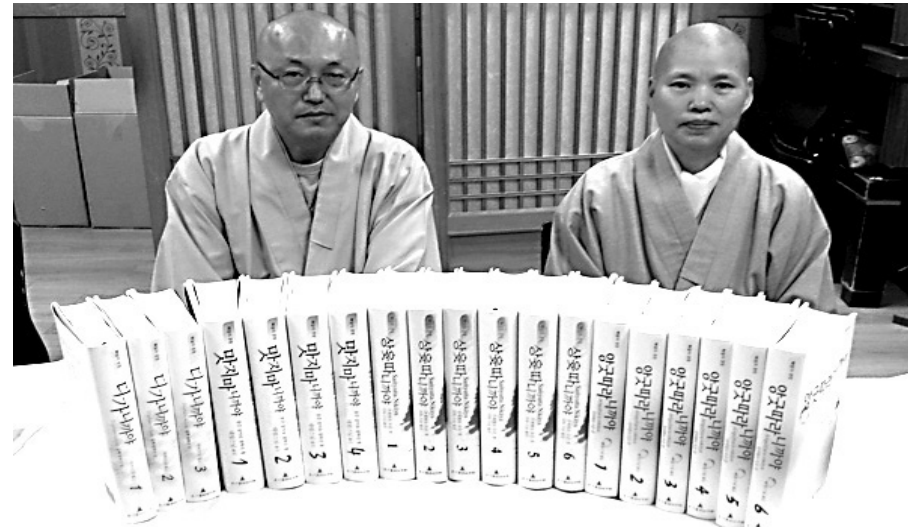
한국불교 세계화 '기대'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목 스님은 〈디가 니까야〉(2006년)와 〈상윳따 니까야〉(2009년)를 완역한 바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번 완역을 기념해 11월 18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4부 니까야 완역 불경법회'도 연다.

이날 법회에서 1부 행사에서는 각목 스님이 '초기 불교는 한국 불교에 무엇을 기



4부 니까야를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 스님(우측)과 지도법사 각목 스님(좌측)

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2부 행사에서는 도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음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헌 의식이 봉행된다.

각목 스님은 "초기 불교는 한국 불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종손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 경전은 크게 생활규범을 담은 율장과 부처의 설법이 담긴 경장, 부처

의 직계제자들이 설한 논장으로 나뉜다. 이중 경장은 '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등으로 전해져 4부 니까야로 불린다.

초기불전연구원은 2017년까지 율장(위냐야 빠따까)과 논장(이비답따 빠따까), 빠알리-한글 대사전·빠알리 술어 대사전 출간 작업 및 전자E북 편찬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중앙총회 정기회 이모저모

# 문화재관람료 카드 결제 '의무화'

###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호계원장 일면 스님 선출

앞으로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는 11월 6일 속개된 중앙총회에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했다.

새신 입법안인 사찰예산회계법 제25조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구역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는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전자발권시스템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다

만 타당할 사유가 있을 경우 총무원회의 의결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30% 예치금 사용 승인 심의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지난 10월 25일 법등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선출됐다.

선출 직후 일면 스님(사진)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짐을 진 것 같다"며 "우리 종단에는 종정 스님을 비롯해 많은 원로가 계신다. 하루를 살아도 텅



으로 살아간다는 임정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 종단 안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면 스님은 1967년 10월 21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제13대 중앙총회의원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균종특별교구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신종일 기자

## 변화하는 조계종 승가고시 정착 일로

### 1~4월 2, 3급 승가고시... 실천적 의제 반영

조계종 승가고시가 단순 지식에 대한 묻는 방식에서 불교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술하는 방식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은 11월 1일 2급 승가고시를, 11월 2~4일까지 3급 승가고시를 직지사에서 각각 개최했다.

교육원이 11월 8일 공개한 시행결과에 따르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56명, 비구니 54명 등 총 11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85명이 합격했다.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388명, 비구니 214명 등 총 602명이 응시해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각각 77%와 85%로,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

세다.

고시의 대표적인 변화는 논술 문제다. 2급은 교학과 전법교과, 사찰운영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하나 이들의 출제 경향이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현대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방식으로 변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이제는 사회적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만큼 불교관과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문제 출제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대승불교 이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조계종, '대승불교' 주제 세미나

동아시아불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승불교에 대한 교수 방안과 실천 방향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성과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대승불교와 오늘의 승가교육' (前 교육부장), '대승경전의 선불교에 미친 영향' (이덕진 강원문성대학 교수),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대승불교의 모습'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도론자로는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승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종호 스님,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참석한다. 교육원은 "선을 중심으로 제종을 포섭하는 조계종의 입장에서 대승불교와 선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실천의 자리"라며 "대승불교적 지향의 실현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종일 기자

# 대한불교원효종

### 규정원법일부개정

본종의 규정원법의 일부 규정이 종단의 현실에 부응하지 않고 종권분열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하여 규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배분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반복규정 및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 규정원법과 관련된 중헌 중법의 규정을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중헌 및 중법은 규정원법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한다.

규정원을 규정부로 격하하고 규정부는 총무원의 부서로써 개정한다. 본 결의는 불기 2556년 9월 24일 2556년 제 2 차 중앙총회에서 결의되었음을 선포한다.

### 총무원장 향온

중앙총회의장 원봉 중앙총회법규위원장 지호 중앙총회법규위원 진산, 지상, 상경, 운영

### 선 계 문

• 성명 : 임우섭 법명 : 성암 승적번호 : 1106-10926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지,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의 조치에 처한다.

### 징계사유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할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지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총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무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향온)

• 성명 : 김경암 법명 : 행길 승적번호 : 1106-10955-1  
• 성명 : 최영화 법명 : 마명 승적번호 : 1905-10854  
• 성명 : 김두환 법명 : 일문 승적번호 : 1705-10641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지,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나, 위 조항으로 19조에 준하여 6개월의 종도 분향상의 일체관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한다.

### 징계사유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할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지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총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무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향온)

### 원로원 구성

원로원장 안상수(정광) 원로부원장 이영구(법진)  
원로위원 김영구(석불) 원로위원 지홍림(효산)  
원로위원 이동준(진택) 원로위원 김옥자(옥운)

### 원로원을 위와 같이 구성함

불기 2556(2012) 11월 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향온)

• 성명 : 이훈구 법명 : 남수 승적번호 : 1509-11035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지,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 조항으로 20조에 준하여 6개월의 근신 조치에 처한다.

### 징계사유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할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지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총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무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향온)